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
----------	------

제출년월일 : 1996. 2.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 1. 제안이유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납세자의 수혜범위 확대와  
짚형 자동차 세율인상으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코자함.

※ 도세정 13400-1428('95. 11. 4), 도세정 13400-1517('95.12.1), 도세정 13400-1538('95.12.6)호로 개정준칙 시달

### 2.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수혜범위 확대 : 1급 내지 5급 → 1급 내지 6급(조례안 제2조제2항)
- 장애인 자동차세 과세면제 범위를 18세이상 지체, 시각장애인에서 모든장애인으로 확대(조례안 제4조)
- 본인병의 등록된 경우에 한하는 것을 부모 및 배우자 포함으로 확대(조례안 제4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조례안 제5조의2)
-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조례안 제6조제7호)
-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확대(조례안 제11조제2항)
-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확대(조례안 제12조제1항)
- 짚형승용자동차 감면 세율 소폭 인상 (조례안 제16조의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자료 : 개정조례(안) 준칙 1부. (붙임)

##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4조중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1조제2항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용 부동산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지정을 받은자 및”을 “지정을 받은 자와”로 하고, “참여 자”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로 한다.

제16조(궤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배 기 량	씨씨당 세 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씨씨 이하	10원	160원
2,500씨씨 이하	12원	180원
3,000씨씨 이하	12원	200원
3,000씨씨 초과	15원	230원

【별표1】을 삭제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에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p> <p>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p>
<p>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p> <p>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동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p>	<p>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p> <p>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p>

현행	개정안
<p>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lt;신설&gt;</p> <p>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6. &lt;생략&gt;</p> <p>&lt;신설&gt;</p>	<p>-----</p> <p>제5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p> <p>1. ~ 6.(현행과 같음)</p> <p>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현행	개정안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p>
<p>제12조(농의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리 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p>	<p>제12조(농의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p> <p>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 -----
1. (생략)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1. (현행과 같음) 2. ----- -----지정을 받은자와----- -----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을 얻은 자
3.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궤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6조(궤형승용자동차에대한 감면) -----



< 별표 1 >

현 행		개 정 안
상 이 등 급 분 류 표		《삭 제》
급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급	108, 109, 111, 112, 113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6 급	35, 36, 47, 48, 115, 116, 117, 1항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9, 2항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 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 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 호수와 복합된 경우에 그 대상 이 된다.	

제 116 호 "관인생략" 경상북도

우 702-702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 - 3 / ☎ 950-2311 / FAX 950-2322 / 담당 정성태

문서번호 세정 13400-1428  
시행일자 1995. 11. 1. (5년)  
정 유  
수 신 시장 군수  
참 조 세정, 세무, 제무과장

선결	시정	지	
취	일자	시	
수	시간	결	부시정
	번호	재	수정
처리과	세무과	공	과정
담당지	시정	관	제정

제 목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조례개정안 송부 정성태

1. 내무부 세제 13400-343('95.11. 2)의 이점입니다.
2.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신체장애,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정각장애인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송부 하되 지방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관여하여 시 군에감면조례를 개정 시행하기 바랍니다.

붙임 : 시군세감면조례개정(안) 1부. 끝.

경상북도지사  
내부국장권결

##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15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과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p>		

“관인생략”  
경 상 북 도

우 702-702 대구 북구 산격동 1443-5/전화950-23111/전송 FAX 950-2322/담당정성태

문서번호 세정 13400 - 1517  
시행일자 1995. 12. 1 (3년)  
경 유

수 신 시장.군수  
참 조 세정, 세무, 재무과장

선	결	시	장	기	관	지	시
집	일	자	간	1995	12	01	부
수	번	호	6911	결	재	부	시
처	리	과	세	무	과	장	정
담	당	자	이	석	훈	수	태

재 목 질자자동차세 감면조례 개정안 송부

1. 내무부 세제 13400 - 265('95. 11. 29)의 이첩임.
2. 서울특별시에서 질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 폐지를 내무부에 허가 요청하였으나 별첨과 같이 수정 허가 되었음을 통보하니 각 시군에서는 본 개정안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것으로 간주하여 시군 세 감면조례를 개정조치 하기 바랍니다.

- 참 부 :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개정 수정허가 공문사본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내부국장전결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꺠형자동차에 대한 감면)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배 기 량	— 씨씨당 세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씨씨이하	10원	160원
2,500씨씨이하	12원	180원
3,000씨씨이하	12원	200원
3,000씨씨초과	15원	230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p>제15조(궤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의한 승용자동차중 궤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p>	<p>제15조(궤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 ----- ----- ----- -----</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head> <tr> <th rowspan="2">배 기 량</th> <th colspan="2">씨씨당 세액</th> </tr> <tr> <th>영 업 용</th> <th>비영업용</th> </tr> </thead> <tbody> <tr> <td>1,000씨씨 이하</td> <td>10원</td> <td>110원</td> </tr> <tr> <td>2,000씨씨 이하</td> <td>10원</td> <td><u>140원</u></td> </tr> <tr> <td>3,000씨씨 이하</td> <td>12원</td> <td>165원</td> </tr> <tr> <td>3,000씨씨 초과</td> <td>15원</td> <td><u>200원</u></td> </tr> </tbody> </table>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영 업 용	비영업용	1,000씨씨 이하	10원	110원	2,000씨씨 이하	10원	<u>140원</u>	3,000씨씨 이하	12원	165원	3,000씨씨 초과	15원	<u>200원</u>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head> <tr> <th rowspan="2">배 기 량</th> <th colspan="2">씨씨당 세액</th> </tr> <tr> <th>영 업 용</th> <th>비영업용</th> </tr> </thead> <tbody> <tr> <td>2,000씨씨 이하</td> <td>10원</td> <td><u>160원</u></td> </tr> <tr> <td>2,500씨씨 이하</td> <td>12원</td> <td>180원</td> </tr> <tr> <td>3,000씨씨 이하</td> <td>12원</td> <td>200원</td> </tr> <tr> <td>3,000씨씨 초과</td> <td>15원</td> <td><u>230원</u></td> </tr> </tbody> </table>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영 업 용	비영업용	2,000씨씨 이하	10원	<u>160원</u>	2,500씨씨 이하	12원	180원	3,000씨씨 이하	12원	200원	3,000씨씨 초과	15원	<u>230원</u>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영 업 용	비영업용																																	
1,000씨씨 이하	10원	110원																																	
2,000씨씨 이하	10원	<u>140원</u>																																	
3,000씨씨 이하	12원	165원																																	
3,000씨씨 초과	15원	<u>200원</u>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영 업 용	비영업용																																	
2,000씨씨 이하	10원	<u>160원</u>																																	
2,500씨씨 이하	12원	180원																																	
3,000씨씨 이하	12원	200원																																	
3,000씨씨 초과	15원	<u>230원</u>																																	



"지방화세계화로 고향발전 나라발전"

내 무 부

우 110-76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 전화731-2510 (행)2510 / 전송731-2516

문서번호 : 세제 13400 -

시행일자 : '95. 11. 29

경 유 :

수 신 : 서울특별시장

신결			지	
접	일자	95.	시	
수	번호		결	
처	리	과	재	
담	당	자	공	
			람	

참 조 : 세정과장

제 목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 수정허가

서울특별시 세징 13415-620('95.8.26)호에 의하여 소형자동차세 감면조례 폐지 허가요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별첨 개정안으로 수정하여 허가하니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하기 바랍니다.

1. 소형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성은 있으나

○ 소형자동차는 일반승용자동차보다 배기량이 높아야만 동일한 출력을 낼 수 있는 구조상 취약점이 있고

○ 봉사산업부에서는 소형자동차산업의 보호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조례세율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 조례감면시한이 '97년까지로 되어 있어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고려하여 감면조례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 됩니다.

2. 따라서 궐행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과세형평상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서울특별시에서만 조례를 폐지하여 세부담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3. 서울특별시상 자치단체와 관련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조정하여 감면제한 만료전인 '96년도에는 현행 조례세율을 소폭 인상하고 향후 궐행자동차 세부담을 연차별로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계획이니 밀원개정조례안대로 시행되도록 시의회외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1권.

내 무 부 장

세 제 국 장 전결



“관 인 생 략”

# 경 상 북 도

우 702-702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 - 3 / ☎ 950-2311 / FAX 950-2322 / 담당 정성태

문서번호 세정 13400- 1536  
 시행일자 1995. 12. 6. (5년)  
 경 유  
 수 신 시장 군수  
 참 조 세정, 세무, 재무과장

신		지	
결		시	기안영
위	일자 1995. 12. 07	절	부서장 김성태
	시간 6991	제	국장 김성태
수	번호	공	과장 김성태
치	리과 세무과	과	장 김성태
담	당자 김성태	세	장 김성태

제 목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안) 시달

1. 내무부 세제 13400-376('95.12. 4)의 이첩입니다.
2. 현행 시군세감면조례중 시군의 개정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입과 같이 시달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 경 상 북 도 지 사

### 00도00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00도00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2조제2항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지시설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지정받은 자 및”을 “지정을 받은 자와”로 하고, “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의”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lt; 신 설 &gt;</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 ----- --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 ----- ----- -----</p> <p>제6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p>



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제13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1. (생략)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3.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 (생략)

②(생략)

1. (현행과 같음)

2. -----  
-----  
-----지정을 받은 자와-----  
-----  
-----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

4.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 &lt; 별표 1 &gt;

현		행	개	정	안
급	수	상이등급분류표		< 삭제 >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급	108, 109, 111, 112, 113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6	1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9, 130, 131			
	2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